



어업감찰(漁業鑑札)을 정함
시마네현 고시(1911년)
우사기무라 현물
【다케시마 자료실 소장】

1911년 12월 30일 시마네 현령 제 54호에 의해 어업취체규칙이 전면적으로 개정됨과 동시에 동년 12월 30일의 시마네현 고시 제 571호에 의해 허가를 받는 어업의 감찰이 정해졌다.